

의안번호	2207769
의 퇴 인	김주영 의원
회 답 일	2025.2.14.
추 계 번호	25B05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제2항~제5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인건비용”이라 한다) 이상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 됨(제2항)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한다)	의무규정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인건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은 전월(인건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게 인건비용을 예치(이하 이 조에서 “인건비용예치”라 한다)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제6항~제7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지급내역 확인 방법, 인건비용예치의 방법·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제2항~제5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로 하여금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전월에 임금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게 인건비용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임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도급인의 임금 구분 지급 의무를 도입하려는 내용임 – 따라서 개정안은 도급인 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제6항~제7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인건비의 구분지급 및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¹⁾, 개정안

1)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520호, 2025.2.23. 시행 예정)을 개정한 내용임

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 개정안은 이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업종별 하도급 계약 관행 및 계약 방식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시스템의 규모와 이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이 곤란
 - 다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²⁾에 따라 국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임금 구분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³⁾에 따른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시스템 고도화 비용 및 유지보수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시스템 개발 비용 등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